

2015년 8월 28일

## 공소심 판결에 대한 견해

-변 목사는 결백하다-

변호사     三木 祥史(미끼 요시히코)  
同         小池 由美(코이케 유미)  
同         高松 和彦(타카마츠 카즈히코)

1. 이번 동경고법은 지방법원에 이어 변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전 신자(이하 자칭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변 목사의 결백함과 판결의 부당성을 선언하는 바이다.

2. 이 두 법원이 자칭피해자들의 주장이 신용 할만 하다고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자칭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 (2)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소했다는 점,
- (3) 고소자가 여럿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그냥 일반론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변 목사를 실각시키기 위해서는 여럿이 모여 함께 음모를 꾸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얼마든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이런 음모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건은 2008년 5월에 터졌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자칭 피해자 ■■■이 회사 경영에 변 목사가 반대한다고 회사를 박차고 나가 교단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다음 이 자칭 피해자는 수년전에 이미 변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단을 떠났던 ■■■와 만나 음모를 공모하게 되었다. 교단 분열과 변 목사의 실각을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동조자들을 모아 변 목사 실각을 위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음모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성추행이었다.

사건에 연류된 또 다른 자칭피해자 ■■■는 본래 변 목사의 성추행 소문은 조작된 소문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도 성추행을 당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당시 모든 여성들이 다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소문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여신도 모두에게 사실확인을 했고, HE로부터 위와 같은 증언을 받아낸바있다. \*역자주)

그랬던 ■■■는 자신이 좋아하던 근무지였던 서울에서 변 목사로부터 시드니로의 전근을 명받자 가지않겠다고 전근 취소청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청원이 거절되자 그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불만을 품고 ■■■와 ■■■를 만나 공모하고 이런 허위 소문 유포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사실임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음을 밝힌다.

3. 본 사건은 자칭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자칭 피해자들이 변 목사에게 오랜 세월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해줄 그 어떤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이 사적으로 쓴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일기장, 큐티 노트, 메일, 편지등에서까지도 단 한건의 피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증거 비슷한 것으로 제출한 것이,

(1) ■■■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면서 증거라고 제출한 2007.2.17 큐티노트.

(2) ■■■가 2003년 변 목사에게 성추행 사과를 받고서 친구에게 보냈다는 메일 한통이 전부다.

그러나 (1) 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것이 거짓임이 분명히 밝혀졌고, 이번 민사판결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전혀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

증거 (2)도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그때 보낸 메일이 아니라 최근에 날조한 것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여러가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것이 허위로 조작된 메일임을 증명했다.

4. 자칭 피해자 ■■■가 강간 당했다고 고발한 날짜는 2007. 2. 17이다. 그러나 그날 변

목사는 한국에서 온 김 영수 목사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손님들과 함께 보냈고, 특히 자칭 피해자가 지정한 범행시간대에는 집 근처를 그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점은 당시 김영수 목사가 촬영한 사진들과 디지털카메라가 증거물로 제출되고, 사진의 원본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동경 경시청 보안부의 검사 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와같이 ■■■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 지방법원 민사부는 이날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주장이다.

■■■ 자신의 사건 진술 내용이 본 사건이 2007.2.17 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은 삼일교회 선교팀이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변 목사님께 불러갔을 때 애란사모님과 비서 ■■■도 함께 있었는데, 두분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하고 난뒤에 두분이 집에 돌아 왔는데 그뒤 넷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등 진술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일들은 다른 날이 아닌 틀림없는 2007.2.17 에 일어난 것이다. 설사 민사판결대로 그날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려해도, 17 일 전후의 다른 날들은 조애란 사모가 한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칭 피해자의 진술이 성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 자신도 피해 날짜 주장을 바꿀 수가 없었고, 일본 검찰조차도 다른 날일 가능성 조차 내비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HE 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실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판결이 거짓 진술자의 진술을 신용할 수 있다고 함은 무엇을 근거로 한단 말인가?

민사 지법과 고법은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에까지 눈을 감고, 자칭피해자의 진술을 본질에 있어서는 신용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5. 앞에서 말한대로 ■■■은 2003 년 4 월 경에 변 목사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사과한 사실을 같은 여신도 ■■■에게 말한적 있다는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 메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진술 내용 중 그가 묘사한 당시 중앙교회 건물 구조는 당시의 교회건물 구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금방 밝혀졌다. 그뿐만아니라 그의 메일도 당시에 작성된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도록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되어 그의 진술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은 2003 년 4 월 동경 신주쿠구에 있는 중앙교회 목사실에서 변 목사의 사과를

받을때 그 당시 비서 ■■■가 함께 사무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날 비서 ■■■는 온 종일 츠쿠바시에 있는 아가페 교회를 떠난적이 없었던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의 진술은 모든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 목사의 성추행 혐의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어떤 배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6. ■■■과 ■■■는 특정한 피해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는데 반해서 ■■■은 피해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변목사의 비서 일지등을 조사한 결과 ■■■이 지정한 그 날짜들 모두 ■■■에게 성추행을 할 수가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됨이 밝혀졌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이 사실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고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7. 자칭 피해자 ■■■가 만일 성추행을 당해서 교단을 떠났다면 왜 떠날때 일부러 변 목사를 찾아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전후로도 편지와 전화등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했을까? 이런 당시의 모든 증거들은 훗날의 진술이 날조된 것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8. 변 목사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다는 자칭 피해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변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 입증된 진실이다.

변 목사는 단지 성경에 근거하여, 그 범위 안에서 영적지도자의 권위를 설명했을 뿐으로 이 교단은 결코 소위 반 사회적인 교단이 아님을 이미 인정 받았었다는 사실이다.

자칭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치욕적인 성추행으로 진정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그대에 변 목사에게 존경과 감사에 찬 편지와 메일들을 보낼 수 있었던 말인가? 어떻게 변 목사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다고 하던 그때 변 목사의 명령이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유분방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말인가? 이런 모든 정황들의 증거는 "성추행을 당했다!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사실은 전부 거짓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 법정은 변 목사가 처음 얼마간은 자칭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반대된다.

변목사는 성추행 소문이 나돌던 처음부터 명확히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후 계속해서 소문이 돌면서 교회를 그만두는 성도들이 속출하게 되자 2008년 12월 20일(\*역자주;소동으로부터 8개월 후), 자기가 교단 대표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교단의 대표직을 사임함으로서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재건 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임회를 열어, “지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한다”는 성명문을 읽고 떠났을뿐, 이것은 결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HE가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노라고 폭로하는 말을 처음으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사임회의 목적이 마지막으로 서로 화해하는 것이었으므로 싸우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준강간을 인정하라고 소리치는 ■■■를 무시하고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나 버린 것이었다.

10. 이상과 같이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 데다가 부자연스럽고 합리적이 아닌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피해자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동경 지법과 고법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며 부당하다. 변 목사는 결백하다.

이상.